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 소지인에게 악의 중과실이 있다면 발행인은 부당 보충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



글/ 박종복 변호사

Q

본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A에게 약 1,000만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백지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A는 위 어음의 액면금을 1억원으로 기재한 뒤 B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B는 현재 본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해오고 있다. 대항방법은?

A

어 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에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설사 A가 귀하와 사이에 미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약속어음을 보충하겠다는 합의를 하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1억원을 보충하여 제3자인 B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면 B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음소지인인 B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인 귀하를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하였거나(악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귀하는 B의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B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귀하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어도 귀하가 당초 A에게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귀하가 B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